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731호 2023. 2. 20.(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 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7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 2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87호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공고 ————— 2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3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84번길 102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2.2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2-2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9-4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84번길 102 (가좌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41-15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1로 72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첫 번째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4-10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482번길 39 (청라동)	20190429	파랑로 시작지점에서 4,820m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에스에스오토(주)
4	인천광역시 서구 황길동 188-2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507번길 32 (황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995-4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4로 94 (원당동)	20200420	'서로' 발전하는 도시'에서 착안. 신도시의 남북을 잇는 네번째 도로	서연프라자
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3-16	인천광역시 서구 물도로16번길 20-1 (석남동)	20090922	물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18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79-11 (경서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8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01-1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73 (심곡동)	20090922	심곡동의 동명을 따서 명명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30-59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216 (가정동)	20090706	옛 간지촌 뒷산의 원 이름인 서달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0 (가정동)	20090922	서곶으뜸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입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3-2-20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김수로 216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김수로 216 (오류동)	소유자 신청	20090922	오류동 산업단지에서 김수로로 진입하는 도로이므로 김수도의 지명을 따 명명	오류동 1498, 1498-3, 1498-8
	인천광역시 서구 김수로 216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김수로 216-7 (오류동)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내용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일자	시행자		사업 착수 예정일	사업 준공 예정일	점용·사용 장소	공사내용
		성명	주소				
2022-04	2023. 2. 7.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도화동)	'22. 5. 6.	'23. 2. 2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9-3	하수관 매설 (재난 관리자원 통합관리 센터 증축공사)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3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내용

점용·사용 허가번호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 장소	공사내용
		성명	주소		
2022-22	2023. 2. 14.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도화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9-3	하수관 매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증축공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3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 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근거 법령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징수포상금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정비

- 징수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추가(안 제2조제3항)
-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사실상 체납징수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5급 이상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2조제4항)

- 나.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 공정성 제고 및 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4조제3항, 제4항, 제5항)
- 다. 기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인용법률 수정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243 / FAX 560-272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근거 법령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포상금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정비

- 징수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추가(안 제2조제3항)
-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사실상 체납징수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5급 이상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2조제4항)

나.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 공정성 제고 및 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4조제3항, 제4항, 제5항)

다. 기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인용법률 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 반영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연도도”를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범위) ①·② (생략)</p> <p>③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9.25, 개정 2011.4.18, 2018. 8. 8)</p> <p>④ 제1항제1호에도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p>	<p>제2조(지급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p>④----- 5급 -----</p>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9.25, 개정 2011.4.18, 2018. 8. 8)

제4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신 설>

④ (생 략)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생 략)

②제3조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7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청장-----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금 지급) ①-----

----- 연도-----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로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여러
명일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
금계좌에 일괄이체 후 수입금출납
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
여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5조 관련)

○신청단체:

○신청분기: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내역				징수 확인	특별 징수 공적 (사유)	포상금 청구 지급액	지급일	본세	가산금	구분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주민 번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5조 관련)

○신청단체:

○신청분기: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수자		납세의무자			징수내역				징수 확인	구분	포상금 청구 지급액	지급일	본세	가산금	비고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발굴 세원	징수액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신청단체:

○신청분기:

○신청자: (인)

(단위: 건, 원)

구 분	징수기간	건수	금 액			포상금 계산액	포상금 신청액	비고
			합계	본세	가산금			
합 계								
과년도 채납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은 세원 발굴	소 계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 ※ 첨부: 1.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서 사본 1부.
 2. 포상금지급신청서, 숨은세원발굴내역(별지 3호서식 부표1, 부표2)
 3.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단체:

○신청분기:

(단위: 건, 원)

신청자			징수(세월발굴)액				포상금 계산액	포상금 신청액	거래 은행	계좌 번호	비고
소속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위와 같이 확인하며 계좌입금 의뢰함
(인)

관계법령 발췌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

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생략>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를 말한다.

-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 고지 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법 제25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37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4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원창동 381-4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5,641.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원창동	381-40	잡	5,641.9	5,641.9	인천광역시	-	-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387호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2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 기초구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 에서는 2023.03.07.까지 서구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구역 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현황

시군구명	설정 등 현황			예비구역번호 수
	설정	변경	폐지	
서구	0	3	0	116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이를 시군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하며 이를 서구 토지정보과(☎032-560-48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자료량이 많아 파일 게시가 곤란할 경우 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4.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3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현황

구역번호	22678, 22679, 22680	
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	'로' 및 행정구역 경계로 이루어진 동일생활권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폐지 사유	검단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 준공예정에 따라 결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중전도면(22678, 22679, 22680)	변경도면(22678, 22679, 22680)

< 참고도면-변경 후 >

